



「공공계약(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상향」 - 안전하고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

- 23년 만에 기술용역(10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인상,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 90% 수준까지 인상
- '26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50% 이상 대폭 상향,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 '25년 국가계약 분쟁 처리건수 역대 최다,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 권익구제 확대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20.(금) 10:00, 「'26년 제1차 조달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②'26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수립 ③'25년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1. 공공계약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이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최저 가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업계(중기중앙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국회 등에서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였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을 통해 공사/물품·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공사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금년 1.30일부터 2%p 상향하여 시행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금번에는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분야별 형평성, 저가입찰 방지 등을 위해 2%p 상향한다. 금번 낙찰하한율 인상은 기술용역 (1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03년 이후 23년 만에,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17년 이후 9년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 세부내역 : 붙임 >

* 중기간 경쟁 분야는 금번 대상에 미포함

*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	현재 80.495~87.995%	→ 개선 82.495~89.995% (+2%p)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현재 79.995~87.745%	→ 개선 81.995~89.745% (+2%p)

특히, 시설분야(청소·경비·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현재87.995% →개선89.995%)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내용은 조달청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6.4월)을 통해 '26.5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2. '26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50% 이상 대폭 확대

정부는 '30년까지 연간 3조원 수준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26년 구매 목표를 약 1조 2,50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목표(7,985억원) 대비 56.5% 높은 수준으로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행 1.0~1.7%에서 1.4~2.8% 수준으로 상향하여 기관별 성과관리 규모를 약 1조원(전년대비 +25%) 수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 '24년도 기관별 전체 물품구매액을 기준으로 산정

①공공기관 구매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편, ②공공기관 맞춤형 수요발굴 강화, ③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④공공기관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별 성과관리 강화와 혁신제품 구매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26년 혁신제품 구매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25년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향후 계획

'25년 조달기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청구한 건수는 60건이며, 처리건수는 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구인용률(50.0%) 및 조정성립률(35.7%)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조달기업을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조달기업이 장기·고비용의 소송 대신 국가계약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제도 및 계약관행 등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내용: ❶증거조사·검증이 필요한 금전적 분쟁사항에 대해 재정(裁定) 도입, ❷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❸부당특약 심사 신설, ❹국선대리인 도입 등

허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공공계약과 조달제도는 모범적 발주자로서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는 한편, 도전적 구매자로서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낙찰하한율 상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조달 공공구매 목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

재정경제부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계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장훈(044-215-5150)
		담당자	사무관	한재수(han142857@korea.kr)

< '26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수립 >

재정경제부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조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노판열 (044-215-5230)
		담당자	사무관	박준영 (parkjy0210@korea.kr)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한도 (042-724-7305)
		담당자	사무관	도미영 (sky97@korea.kr)

< '25년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향후계획 >

재정경제부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계약분쟁심사과	책임자	과 장	임재정(044-215-5640)
		담당자	사무관	류남욱(jknamu@korea.kr)



붙임

국가계약법령 상 분야별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개정(안)

낙찰자 선정 방법	분야 (적용기준)	규모 (추정가격)	적격심사 통과 점수	낙찰하한율			
				현행	개정(안)		
적격심사	물품	일반 (조달청지침)	고시금액 미만(제조·구매)	85점	84.245%	86.245%	
			고시금액 이상(제조·구매)		80.495%	82.495%	
		중기간 경쟁*		88점	87.995%	87.995%	
	역무	일반 (조달청지침)	시설분야		85점	87.995%	89.995%
			폐기물처리 / 화물육상 / 학술연구, 임대차 등	고시금액 미만		84.245%	86.245%
				고시금액 이상		80.495%	82.495%
		중기간 경쟁*		88점	87.995%	87.995%	
		기술 (조달청지침)	고시금액 미만		95점	87.745%	89.745%
			고시금액 ~ 5억원			86.745%	88.745%
			5억 ~ 10억원			85.745%	87.745%
	10억원 이상		92점	79.995%		81.995%	
	공사 (계약예규·조달청지침)**	2억원* 미만 *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 등 : 8천만원		95점	89.745%	89.745%	
		2억원* ~ 3억원 미만 *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 등 : 8천만원			89.745%	89.745%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9.745%	89.745%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전기·통신·소방·국가유산 등 : 3억원			88.745%	88.745%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87.495%	87.495%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기부고시)

** 공사 분야는 쉰 구간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여 '26.1.30일부터 시행 (적격심사기준(재경부 계약예규)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